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14일

연희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황 *구	황 *구 1967-01-18	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7번길 (연희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01
김 *재	김 *재 1999-05-27	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26번길 (심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01